

□ **신·구조문대비표**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1조(총회의 구성)</p> <p>①~③ “생략”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·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,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. <개정 2016. 4. 29.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 설></p>	<p>제11조(총회의 구성)</p> <p>①~③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④ 제1항에 따른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시·도체육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, 해당 단체가 새로 지명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된다. <개정 2016. 4. 29., 2025. 00. 00.></p> <p>⑤ 제4항에 따라 부회장 중에서 지명된 대의원은 지명 당시의 해당 단체의 장의 재임 기간에만 대의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지며, 정회원단체는 이를 교체할 수 있다. <신설 2025. 00. 00.></p> <p>⑥ 정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이 교체된 경우에 해당 단체는 지체 없이 시·도체육회에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25. 00. 00.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의원 자격 부여 방식 및 자격 보유 기간 등 명확화 (정관 조항 준용)
<p>제24조(회장의 선출)</p> <p>① “생략”</p> <p>②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사도체육회 정회원단체의 장 2. “생략” <p>③ “생략”</p> <p>④ 시·도체육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3. “생략” 4.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,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. <p>⑤ “생략”</p> <p>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5. 10.></p> <p>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</p>	<p>제24조(회장의 선출)</p> <p>①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② 대의원확대기구는 다음 각 호의 선거인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5. 00. 00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의원 2. “현행과 같음” <p>③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④ 시·도체육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와 관련된 사무의 처리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 00. 00.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~3. “현행과 같음” 4.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, 사·도 체육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. <p>⑤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⑥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35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선거, 보궐선거, 사도체육회의 설립 분할 또는 합병으로 인한 선거(이하 “보궐 선거등” 이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5. 10., 2025. 00. 00.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11조제4항과 부합하도록 변경 • 주체단체 현실화 • 후보자등록 의사 표명서 제출기간 확대 •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보궐선거등 약어 정의 신설

현행	개정안	비고
<p>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<u>30일</u>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다만, <u>재선거 및 보궐선거</u>의 경우에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<개정 2022. 5. 10.></p> <p>⑧~⑭ “생략”</p>	<p>⑦ 상임임원 및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선거일 전 <u>35일</u> 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다만, <u>보궐선거등</u>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. <개정 2022. 5. 10., <u>2025. 00. 00.</u>></p> <p>⑧~⑭ “현행과 같음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제6항의 후보자 등록 의사표명과 직무제한의 일정 일치화
<p>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·도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9. 5. 29., 2021. 10. 6.></p> <p>1~5. “생략”</p> <p>6. <u>체육회</u> 이사회가 회원단체(<u>회원시·도체육회, 회원종목단체</u>)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<u>해당회원단체</u>의 임원으로 <u>지정일로부터</u>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<신설 2021. 10. 6.>, <개정 2022. 5. 10., 2022. 11. 17.></p> <p>②~④ “생략”</p>	<p>제30조(임원의 결격사유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·도체육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2019. 5. 29., 2021. 10. 6., <u>2025. 00. 00.</u>></p> <p>1~5.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6. <u>체육회 및 시·도체육회</u> 이사회가 회원단체(<u>회원시·도체육회, 회원종목단체</u>)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<u>해당 회원단체의</u> 임원으로 <u>지정된 날부터</u>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<신설 2021. 10. 6.>, <개정 2022. 5. 10., 2022. 11. 17.></p> <p>②~④ “현행과 같음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·도체육회가 지정하는 관리단체까지 포함 • 지구수정
<p>제38조(스포츠공정위원회)</p> <p>①~② “생략”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“생략”</p> <p>2. <u>체육회</u>와 <u>체육회 관계단체</u>의 임직원인 사람 <개정 2022. 5. 10.></p> <p>④~⑤ “생략”</p>	<p>제38조(스포츠공정위원회)</p> <p>①~②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 <개정 <u>2025. 00. 00.</u>></p> <p>1.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2. <u>시·도체육회</u>와 <u>시·도체육회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</u>의 임직원인 사람 <개정 2022. 5. 10.></p> <p>④~⑤ “현행과 같음”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체단체 현실화
<p>제50조의2(시·도체육회장의 협의회 등)</p> <p>①~② “생략”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방체육발전 등에 관한 의견을 <u>체육회</u>에 제출할 수 있으며, <u>체육회</u>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 통보하여야 하며, 타당하다고 인정하면</p>	<p>제50조의2(시·도체육회장의 협의회 등)</p> <p>①~② “현행과 같음”</p> <p>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지방체육발전 등에 관한 의견을 <u>체육회 또는 시·도체육회</u>에 제출할 수 있으며, <u>체육회 또는 시·도체육회</u>는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분명하게 적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체단체 현실화

현행	개정안	비고
<p>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20. 7. 29., 2022. 5. 10.]</p> <p>④ “생략”</p>	<p>어 통보하여야 하며,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 5. 10., 2025. 00. 00.></p> <p>④ “현행과 같음” [본조신설 2020. 7. 29.]</p>	<p>• 자구수정</p>